

○○○씨 세보 편찬규약

第一章 총 칙(總則)

第一條 본 규약(規約)은 ○○○씨 관찰사공(觀察使公) 세보(世譜)의 편찬기준(編纂基準)을 정(定)하여 본(本) 사업(事業)을 원활(圓滑)히 수행(遂行)하고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정(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본 규약(規約)에서 사용(使用)하는 용어(用語)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 ① 「종회(宗會)」라 함은 관찰사공종회(觀察使公宗會)를 말한다.
- ② 「편찬(編纂)」이라 함은 보책(譜冊)을 발간(發刊)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편집(編輯)」이라 함은 보책(譜冊)을 만들기 위해 각종(各種)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정리(整理)하는 과정(過程)을 말한다.
- ④ 「수권(首卷)」이라 함은 一질(帙)의 보책(譜冊) 중 첫째 권(卷)을 말한다.
- ⑤ 「손록(孫錄)」이라 함은 수권(首卷)에 수록(收錄)된 선조(先祖)를 제외(除外)한 후손(後孫)들의 행적(行蹟)을 기록(記錄)한 보책(譜冊)을 말한다.
- ⑥ 「수단(收單)」이라 함은 본인(本人)의 이름과 이력(履歷)을 적은 단자(單子)를 수합(收合)하는 것을 말한다.
- ⑦ 「행장(行狀)」이라 함은 돌아가신 분의 그 평생(平生)에 지낸 행적(行績)을 적은 글을 말한다.
- ⑧ 「별보(別譜)」라 함은 수권(首卷)이나 손록(孫錄) 외에 별책(別冊)을 말한다.

第三條 본 규약(規約)은 관찰사공세보(觀察使公世譜)를 편찬(編纂)하는데 관계(關係)되는 예하(隸下) 지파종회(支派宗會) 및 모든 문중(門中) 소종회(小宗會)에 적용(適用)한다.

第四條 종회(宗會)는 第一條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各號)의 사항(事項)을 성실(誠實)히 이행(履行)할 책무(責務)를 진다.

- ①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의 계획수립(計劃樹立), 시행(施行), 조정(調整), 통제(統制)
- ②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의 예산편성(豫算編成) 집행(執行)
- ③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을 위한 기구(機構) 구성(構成), 운영(運營)에 관한 사항(事項) 결정(決定)
- ④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에 관(關)하여 예하(隸下) 지파종회(支派宗會)에 대한 지도(指導) 감독(監督)
- ⑤ 종인(宗人)들의 의견(意見)에 대한 조정(調整) 및 결정(決定)
- ⑥ 본(本) 규약(規約)의 제정(制定),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심의(審議) 의결(議決)
- ⑦ 본(本) 사업(事業)에 필요(必要)한 회의(會議) 소집(召集)-회의(會議) 주관(主管)

第五條 관찰사공(觀察使公)의 후손(後孫)은 족보편찬(族譜編纂)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義務)를 진다.

- ① 모든 종인(宗人)은 본(本) 규약(規約)을 준수(遵守)하여 타(他) 지파종회(支派

宗會)의 귀감(龜鑑)이 되는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할 수 있도록 적극(積極) 협조(協助)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종인(宗人)은 사실(事實)에 입각(立脚)하여 개인별(個人別) 또는 가족단위(家族單位)의 단자(單子)를 작성(作成)하여 직접(直接) 제출(提出)하여야 한다. 단(但), 부득이한 경우 친인척(親姻戚) 및 각(各) 종회(宗會) 임원(任員) 및 대의원(代議員)을 통(通)한 인편(人便)으로 제출(提出)할 수 있다.
- ③ 보책(譜冊)을 구입(購入)하여 후손(後孫)에게 물려줄 의무(義務)를 가진다.
- ④ 모든 종인(宗人)은 선조(先祖)의 새로운 행적(行績), 유적(遺蹟)과 종원(宗員) 발굴(發掘)의 의무(義務)가 있다.
- ⑤ 모든 종인(宗人)은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심사(審査), 심의(審議), 의결(議決) 및 결정(決定)에 승복(承服)하여야 한다.

第二章 편찬업무(編纂業務) 수행기구(遂行機構)

第六條 족보편찬(族譜編纂)을 원활(圓滑)히 하고 第四條(宗會의 責務) 각호(各號)의 사항(事項)을 수임(受任)하기 위하여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 내(內)에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를 설치(設置) 운영(運營)하며 아래와 같은 책무(責務)를 진다.

- ① 족보편찬(族譜編纂)을 위한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의 책무(責務) 수임(受任)
- ② 족보편찬(族譜編纂)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 심의(審議) 의결(議決)
- ③ 종계(宗系) 간(間) 또는 종인(宗人) 간(間) 상반(相反)된 의견(意見) 제시(提示)에 대한 심의(審議) 의결(議決)
- ④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지도(指導) 감독(監督)
- ⑤ 상벌(賞罰) 규정(規定)에 의한 상벌위원회(賞罰委員會) 책무수행(責務遂行)
- ⑥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 추진결과(推進結果)-정기(定期) 대의원총회(代議員總會) 보고(報告)
- ⑦ 사적(史蹟) 및 이의신청사항(異議申請事項) 심사(審査)

第七條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사무실(事務室)은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 회관(會館) 내(內)에 둔다.

第八條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는 아래와 같은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한다.

- ① 위원장(委員長) : 一人
- ② 부위원장(副委員長) : 二人
- ③ 감사(監事) : 二人
- ④ 총무위원(總務委員) : 一人
- ⑤ 위원(委員) : 약간 명

第九條 임원(任員)의 책무(責務)는 아래와 같다.

- ① 위원장(委員長) : 족보편찬(族譜編纂) 사업전반(事業全般)에 관(關)한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한다.
- ② 부위원장(副委員長) : 위원장(委員長) 유고시(有故時) 연령순차(年齡順次)로 위원장(委員長)의 업무(業務)를 대행(代行)한다.
- ③ 감사(監事)는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업무(業務) 및 회계(會計)를 감사(監

査)한다.

- ④ 총무위원(總務委員)은 서무(庶務) 및 회계경리업무(會計經理業務)를 겸(兼)하여 수행(遂行)한다.
- ⑤ 위원(委員) :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보고사항(報告事項) 중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에 회부(回附)할 사항(事項)이 있을 시(時) 상정(上程)하여 심의(審議)의결(議決)한다.

第十條 임원(任員)의 선임(選任)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위원장(委員長) :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 도유사(都有司)는 당연직(當然職) 위원장(委員長)이 된다.
- ② 부위원장(副委員長) : 참판공중회(參判公宗會) 도유사(都有司)와 좌통례공중회(左通禮公宗會) 도유사(都有司)는 당연직(當然職) 부위원장(副委員長)이 된다.
- ③ 감사(監事) :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 감사(監事)가 겸임(兼任)한다. 단(但), 감사(監事)가 편찬위원(編纂委員)으로 선임(選任)되면 당해(當該) 중회(宗會)의 추천(推薦)을 받은 종원(宗員)으로 선임(選任)한다.
- ④ 총무위원(總務委員) 및 위원(委員) :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이 지명(指名)하여 선임(選任)한다.
- ⑤ 고문(顧問) :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은 족보편찬(族譜編纂)에 경험(經驗)이 있는 분을 고문(顧問)으로 추대(推戴)할 수 있다.

第十一條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이 완료(完了)된 시점(時點)으로 한다. 궐원(闕員) 시(時)에는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이 지명(指名)하여 선임(選任)한다.

第十二條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는 수시(隨時)로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와 합동(合同)으로 회의(會議)를 개최(開催)한다.

第十三條 족보편찬(族譜編纂)의 실무(實務)를 담당(擔當)할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를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 내(內)에 설치(設置) 운영(運營)하며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책무(責務)는 다음과 같다.

- ① 족보편찬(族譜編纂)의 실무(實務) 수행(遂行)
- ② 중회(宗會) 및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로 부터 위임(委任)받은 업무수행(業務遂行)
- ③ 종인(宗人)의 단자(單子) 수합(收合), 단자(單子) 작성(作成) 지도(指導) 및 보완(補完) 교정(校訂) 확인업무(確認業務)
- ④ 족보편집(族譜編輯) 및 족보책(族譜冊) 발간(發刊)의뢰(依頼)
- ⑤ 소정(所定)의 족보책대금(族譜冊代金) 수금(收金) 및 집행(執行)
- ⑥ 종인(宗人)의 거소(居所) 파악(把握) 및 홍보활동(弘報活動)
- ⑦ 편집업무(編輯業務) 진행결과를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에 수시(隨時) 보고(報告)
- ⑧ 선대(先代)의 행적(行蹟) 및 유적(遺蹟) 등(等) 자료수집(資料蒐集)
- ⑨ 수단위원(收單委員)의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는 임원(任員) 및 대의원(代議員)의 수단활동(收單活動) 지원(支援) 및 자문(諮問)
- ⑩ 문헌(文獻) 등(等) 사적(史蹟) 심사(審査) 고증(考證)

第十四條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사무실(事務室)은 관찰사공중회(觀察使公宗會) 회

관(會館) 내(內)에 둔다.

第十五條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는 아래와 같은 임원(任員)으로 구성(構成)한다.

- ① 위원장(委員長) : 一人, 부위원장(副委員長) : 二人
- ② 총무위원(總務委員) : 一人
- ③ 편집위원(編輯委員) : 약간명(若干名)
- ④ 고증(考證) 및 교정위원(校訂委員) : 약간명(若干名)
- ⑤ 수단위원(收單委員) : 종회(宗會) 및 지파종회(支派宗會) 임원(任員) 및 대의원(代議員)이 수단위원(收單委員)의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한다.

第十六條 임원(任員)의 책무(責務)는 아래와 같다.

- ① 위원장(委員長) : 세보발간실무(世譜發刊實務) 전반(全般)에 걸친 회무(會務) 총괄(總括)한다.
- ② 부위원장(副委員長) : 위원장(委員長) 유고시(有故時) 업무(業務)를 대행(代行)한다.
- ③ 감사(監事)는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업무(業務) 및 회계관련사항(會計關聯事項)을 감사(監查)한다.
- ④ 총무위원(總務委員)은 서무(庶務) 및 회계경리업무(會計經理業務) 수행(遂行)한다.
- ⑤ 편집위원(編輯委員)은 편집(編輯)에 관한 사항(事項) 의결(議決) 및 편집(編輯) 업무(業務)를 보조(補助)한다.
- ⑥ 수단위원(收單委員)은 족보편찬(族譜編纂) 홍보활동(弘報活動) 및 종인(宗人)의 단자(單子) 작성요령(作成要領)을 지도(指導)한다.

第十七條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임원(任員)은 아래와 같이 선임(選任)한다.

- ① 위원장(委員長) 및 총무위원(總務委員), 편집위원(編輯委員)은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이 지명(指名)하여 선임(選任)한다.
- ② 감사(監事)는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감사(監事)가 겸임(兼任)한다.
- ③ 수단(收單)위원은 종회(宗會) 및 지파종회임원(支派宗會任員) 및 대의원(代議員)이 수단위원(收單委員)의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한다.

第十八條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의 임원임기(任員任期)와 같다.

第十九條 각종(各種) 회의(會議)의 의사결정(議事決定)은 재적임원(在籍任員)의 과반수(過半數)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第二十條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는 다음의 문서(文書)를 보존(保存)하며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이 완료(完了)되면 종회(宗會)로 이관(移管)한다.

- ① 족보(族譜)
- ② 단자(單子)(收單紙)(수단지)
- ③ 선대(先代)의 행장(行狀) 및 문헌(文獻)
- ④ 종원(宗員)의 호적등본(戶籍騰本)
- ⑤ 위원회(委員會)에서 작성(作成)한 업무관계서류(業務關係書類) 및 회계관련서류(會計關聯書類)

第三章 재정(財政) 및 회계(會計)

第二十一條 종회(宗會)는 특별회계재정(特別會計財政)으로 본(本) 사업(事業)을 시행(施行)한다.

第二十二條 편집위원장(編輯委員長) 및 상근(常勤) 편집위원(編輯委員), 수단위원(收單委員)과 사무원(事務員)에게 편찬사업종료시(編纂事業終了時)까지 관공비(辦公費), 거마비(車馬費), 여비(旅費) 및 급료(給料)를 지급(支給)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와 편집위원회(編輯委員會)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종회(宗會) 회계연도(會計年度)에 준(準)하며 결산(決算) 후(後) 종회회계(宗會會計)에 귀속(歸屬)한다.

第四章 상벌(賞罰)

第二十四條 편찬사업(編纂事業)을 효과적(效果的)으로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선조행적(先祖行蹟), 유적(遺蹟) 및 종원발굴(宗員發掘)에 공(功)이 있는 종원(宗員)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상벌(賞罰)에 관한 세부사항(細部事項)은 상벌규정(賞罰規定)에 준(準)한다.

부칙(附則)

第一條 본(本) 규약(規約)에 정(定)하지 아니한 사항(事項)은 종회규약(宗會規約)과 민법(民法)에 의한다.

第二條 족보편찬사업기간(族譜編纂事業期間)은 二〇〇六年 九月부터 二〇〇八年 十二月까지로 정(定)하고 부득이한 사정(事情)으로 지연(遲延)될 경우에는 연장(延長)할 수 있다.

第三條 본(本) 규약(規約)은 二〇〇六年 九月 一日부터 시행(施行)한다.

〇〇〇씨 〇〇〇파 세보편수위원회